

상습적인 방화의 유형

송 재 철 <화재조사 전문가>

1986년 5월 21일 21시경 지방의 작은 타이어 재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공장은 1985년 6월 17일 C형제가 고물업을 하는 K(35세) 등 4명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세운 공장으로 '85년 7월 20일 B화재보험 J시 지점에 출자금의 배가 넘는 1억5천만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86년 1월 23일 타이어 재생기 13대중에 4~5대만 가동을 하던 중 사고 당일은 1대만 가동되는 등 정상적 작업이 되지 않고 있었다.

제품 출고도 소형타이어 소량만이 출고되는 등 월간 평균 생산량이 500개 정도인데, 그것도 타이어 조합의 검사를 받은 후 전국 운수업체나 재생 타이어 판매상을 상대로 판매해야 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아 제품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86년 4월 초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공장에 방화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86년 5월 22일 S군 단위농협 조합에서 휘발유 20ℓ를 구입하여 공장에 쌓아 둔 폐타이어 더미에 접착제와 같이 놓아두고 K가 불이 붙어있는 연탄불을 5~10cm로 근접시켜 놓아 시간이 지나 연탄열이 왕성해 질 때 인화될 수 있도록 지능적으로 배치하고 나와, C와 같이 인접 A시로 나가 술을 마시면서 자주 집 등으로 전

화를 걸어 소재를 알리는 등 사전 알리바이까지 조작해 놓았다. 그런가하면 공장 작업을 저녁 6시에 마치고는 종업원들과 친睦을 하고 7시반경 공장으로 돌아와 종업원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시간이 8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C는 K와 음주후에 A시 숙소에서 화재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아 알게 되었고, 공장에 도착한 시간이 10시반이라는 정확한 기억의 치밀함을 보인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보험은 B화재 J시 지점 모집인 D가 J시에서 주택 구입 문제로 알게된 C가 공장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장을 방문하여 1억원을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타이어 재생공장 1억원, 직포공장 1억5천만원의 보험을 가입(C가 타이어 재생공장, K가 직포공장을 운영키로 함)하였으나, 직포공장 허가가 나지 않고 보험회사의 1억원 융자도 이루어지지 않자, 직포공장의 보험 1억5천만원짜리는 해지하고, 타이어 재생공장만 85년 8월 31일자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약하여 1억5천만원짜리 보험이 된 것이다.

공장은 야산에 위치한 임대 건물로서 가장 추운 절기인 85년 1월에 농협 창고 40평과 대지 3백 70평을 주민 E씨로부터 6백80만 원에 구입하여 2~3월 사이에 창

고 벽을 헐고 1천9백여 만원을 들여 1백20평 정도 무허가로 증축하였다.

등기상 주인은 E씨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계는 모두 중고로써 구입 시기나 구입처, 구입가격 등을 증빙할 근거가 모호한데다 일부는 판매자와의 가격 진술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C형제는 과거 E군, H읍 등에 서도 타이어 재생 공장을 했고, 이들 공장에서도 화재의 이력이 있어 각각 화재 보험금으로 재해보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82년 9월 30일 E군에서는 D화재보험에 1억1천만원 가입하여 실사 결과 7천5백만원을 수령하였고, 84년 9월 28일 H읍에서 H보험에 3억2천만원 가입하여 실사 결과 1억2천2백29만9천5백원을 수령) 당시 소훼 되었던 기계의 처분처가 분명치 않고 과거 화재 보험금의 소모 내역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자산, 운영 자금 관계 등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어 자료를 수집한 뒤 과거 화재 사용된 타이어 재생 기계의 재사용 관계와 구입처 등을 다각적으로 집중 조사하게 되자 궁지에 몰린 이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이 불이 실화인 것을 자인하는 등 화재 사건이 간단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적극적 태도 표명이 있었으나, 실화했다는 경



과 설명에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화재전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접근하는 등 행동에도 부자연스러웠음이 있었고, 화재후에는 사용한 연탄화덕·고무접착제를 담았던 용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현장을 변경한 행적도 있었음이 현장 검증시 재연으로 나타나 압수 조치하였던 것이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과거 화재 이력에 자신을 얻은 이들이지만 화재 사건의 화인 조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측치 못했던 것이다.

사이비 종교의 광신자가 일으킨 연쇄방화도 있었다.

1987년 J시 K절의 대웅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 47분 뒤에는 D절의 법당에서도 화재가 발생, '화재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세인들의 관심을

높이기에 족하였다.

K 절은 대한 불교 조계종의 한 교구의 말사로서 1983년도에 착공하여 1986년 9월에 완공된 전형적인 목조 기와지붕의 사찰이며, D절은 법화 종파로서 일본식 목조 주거 가옥의 내부를 개조한 것이다.

화재는 모두 급속 발열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발화부이자 화원부가 대웅전 내부인 점이 특징이었다.

두 절은 약 3.2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차로는 약 7분이 소요되나 발생 시간이 약 47분이 차이가 나는 점과 D절의 입구 간판에 '회개하라', '죄악이다', '용서빌라'라는 낙서가 있었고, 1978년 11월 중순에 '특정 후보지지를 중지하라'는 등의 협박 전화가 K절에 걸려 왔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종교나 종파간의 감정이나 시비, 선거관련 또는 시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저질

러진 방화 가능성을 두루 조사하던 중, 1987년 11월 중순 Y천주교회의 성모 마리아상을 깨뜨리고 도주한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려져 추적중에 있던 폭력 전과 2범인 Y(32세)를 1988년 1월 3일 인근 S시에서 연행하게 되었다. 결국 Y가 이들 두 절에 들어가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Y는 S시 출신으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자로서 그는 자신이 믿는 교파와 다른 종교나 교리는 일체 죄악이니 회개해야 한다면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종교의 광신자였던 것이다.

Y는 K절의 경내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대웅전 측문으로 들어가 불상만 파괴하고 나오려다가 불단옆에 있는 위패들을 보고 이들 영혼들의 목이 매어 있는 것처럼 보여 자신만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단에 있던 양초를 여러개 끓어서 불을 붙이고 빼져나와 곧장 걸어서 D 절로 가 같은 방법으로 방화를 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Y는 이를 화재전까지 천주교회 11개소, 개신교회 8개소, 사당 3개소와 H사찰에도 들어가 종교관계 기물이나 집기 등을 파괴하거나 방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들은 피해가 경미해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⑥